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

(대표발의: 이민석 의원)

의 안 번 호 ²⁰⁻⁴¹

발의년월일 : 2020. 5. .

발의자 : 이민석, 강명숙, 권영숙, 김성희,

김영미, 김진천, 이홍민, 정혜경,

채우진, 한일용

1. 제안이유

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정의(안 제2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라.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(안 제4조)
- 마. 우수업체 지원(안 제5조)
- 바. 교육과 홍보(안 제6조)
- 사. 민간위탁(안 제7조)
- 아. 표창(안 제8조)

3. 관계법령

가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2020. 5. 12. ~ 5. 16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 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1회용품"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 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마포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4조(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체(이하 "우수업체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.

- 제5조(우수업체 지원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체가 1회용 품 사용 저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수업체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
- **제6조(교육과 홍보)**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
 - 2.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
 - 3.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7조(민간위탁)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, 공익법인 등(이하 "민간단체 등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표창)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.
-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계법령】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(약칭: 자원재활용법)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83호, 2018. 12. 24., 일부개정]

제10조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- 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
- 2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·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
- 3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
- 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- 5.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
- 6.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

-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 - 1.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 게 음식물을 제공·판매·배달하는 경우
 - 2.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
 - 3.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-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